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50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조승환 · 김승수 · 이성권
유용원 · 곽규택 · 인요한
권영진 · 김재섭 · 김성원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강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해당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 소속으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감은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 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의 조

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2 신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직원에게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따른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생략)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직원에게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u><신 설></u>	④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13조의2(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따른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직원질병심
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직원질병심
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